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요소 및 실행방안

핵심요소	실행방안
1. 경영자 리더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명확하고 구체적인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설정 모든 종사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공표·게시
2. 안전보건 인력·예산 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보건 조직·담당자를 지정하고, 권한과 책임을 부여 안전·보건 예산 편성, 용도에 맞게 집행
3. 유해·위험요인 파악·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해·위험요인을 파악·개선하는 위험성평가 실시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및 근로자 교육 등을 통해 유해·위험요인 파악·개선에 근로자 참여·공유 근로자 참여 및 의견 청취 절차 마련(안전보건 제안 제도, 아차사고 신고, 안전 소통채널 운영 등) 도급·용역·위탁 시 산재예방 역량을 갖춘 수급인 선정
4.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고 등 비상상황 대비 매뉴얼 마련 및 훈련·점검 산재사고, 아차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등반기 1회 이상 정기적 점검·평가

- 1 명확하고 구체적인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를 수립하여 회사 내의 모든 종사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게시하세요.
- 2 우리 사업장에 법에 따라 필요한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수를 확인해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등을 지정하고, 재해 예방에 필요한 적정 예산을 편성하세요.
- 3 사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 제안제도, 아차사고 신고 등 근로자의 의견 청취 절차를 마련하세요.
- 4 비상대응체계 수립·훈련,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세요.
- 5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확인·개선이 이루어졌는지 정기적으로 점검·조치하는 체계를 잘 갖추세요.
 - »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가장 중요하게 할 일은 안전보건 경영에 관심을 갖고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것입니다.

2024 산업안전 대진단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하고 개선해 보세요!



산업안전 대진단, 무엇인가요?

- 중대재해 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해 중소기업(5~50인 미만) 83만개소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자가진단하고, 정부의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안전수준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산업안전 대진단, 왜 해야 하나요?

-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중소기업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궁극적으로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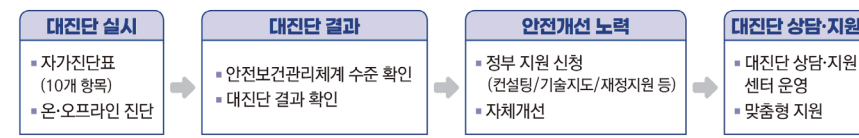
산업안전 대진단,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 (온라인) PC·모바일로 접속하며, 접속 방법은 아래의 절차를 따라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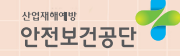
- (오프라인) 우편·방문을 통해 안내받은 자가진단표를 작성하고,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통해 상담·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 문의) ☎1544-1133

산업안전 대진단, 어떻게 진행 되나요?



산업안전 대진단, 어떤 혜택이 있나요?

- 첫째, 대진단 실시 후 지원신청 사업장은 신속한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둘째, 상담·지원센터에서 사업장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셋째,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안전보건관리체계

이것만은 꼭!

손에 잡히는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24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란?

기업의 여러 기능들이 각각의 역할을 하면서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통합된 조직체를 말합니다.

인체에 비유하여 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12대 구성 요소

머리 의사결정 기능

1 리더십

경영책임자의 안전 리더십 외부 표출
결과물 : 신년사, 안전선포식, 교육 시 의지표명

2 안전경영 방침·목표

방침은 명확·간단히, 목표는 정량화하여 구체적으로 설정
결과물 : 방침·목표를 한 장으로 하여 근로자와 공유할 수 있도록 곳곳에 부착

3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경영 활동과 관련된 기본 방향 및 내용
결과물 : 소규모 사업장용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매뉴얼 등

혈액 결정사항 수행도구

7 위험성평가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이행, 결과 공유
결과물 : 위험성평가 결과표 작성·보관

8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유해·위험요인을 근로자에 전달하는 핵심수단
결과물 : TBM 일지 작성·보관

9 안전보건교육

연초에 교육일정 수립, 일정에 맞춰 시행
결과물 : 연간 교육일정표

손·발 결정사항 집행

4 조직

안전경영 방침·목표, 위험성평가 등 체계적 집행
결과물 : 안전보건 조직도

5 인력

기업의 규모와 여력 등을 고려 최대 수준 확보
결과물 : 안전보건관리 업무 담당자 지정

6 예산

소액이라도 안전보건 전용 예산 확보, 대표자 결재로 집행
결과물 : 안전보건 예산편성표
* 세분화하지 않고 총액만성도 가능

자율신경 체계의 자율회복 수단

10 비상조치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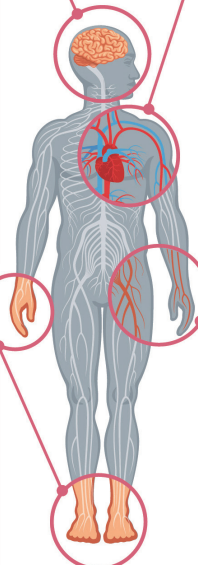
비상대응 매뉴얼 마련·공유, 주기적 훈련
결과물 : 비상대응 매뉴얼, 반기별 매뉴얼 준수여부 점검

11 재발방지대책

사고원인 분석, 대책 마련·이행, 근로자 교육
결과물 : 사고별 재발방지대책 및 이행결과

12 점검·평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개선
결과물 : 위험요인 확인·개선 점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 점검 결과 및 조치 서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안전의 시작입니다.

2024년도 중·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 안내

-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여(법 제4조 및 제5조)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에서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에서 '24년 1월부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니,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컨설팅 대상	제조·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49인 사업장(50~299인 사업장 신청 가능)
건설업종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200위 초과 종합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

사업장 비용 부담		사업장 규모별 비용 부담 차등 적용	
구분	자부담 부과 없음	자부담 부과	
		(수수료 3만원/회)	(수수료 12만원/회)
제조업 등	근로자수 5~29인	근로자수 30~49인	근로자수 50인 이상
건설업	(종합) 1천위 초과 (전문) 200위 초과	(종합) 301~1천위 (전문) 20~200위	(종합) 201~300위 (전문) 20위 이내

※ 자부담금은 1회차 컨설팅 종료 시 컨설팅 기관에 납부, 다음 회차 시작 전까지 미납 시 컨설팅 지원 종료

컨설팅 방법 공단에서 선정하여 계약한 민간 전문기관*에서 사업장을 방문하여 컨설팅 (2~4개월, 제조업 등 4~5회, 건설업 7회)

민간 전문기관 안전·보건관리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산업안전·보건지도사법인, 노무법인 등
→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사업소개 - 산업안전/건설안전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신청 및 접수처

○ **신청방법** 안전보건공단 광역(지역)본부에 신청서 제출 방문(팩스, 우편, QR접수, 이메일)
* 관할 광역본부에서 사업장에 접수 결과 및 컨설팅 기관 배정상황 등을 안내 예정

○ **사업장 소재지별 공단 문의처**

제조·기타업	주관기관	접수 권역 및 연락처	주관기관	접수 권역 및 연락처
URL주소 https://kras.kosha.or.kr (PC 사용 권장) QR코드 	서울 광역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장 소재지 서울, 강원도 *강원도 철원 : 인천광역시 TEL 02-6711-2967, 2972 FAX 02-6711-2959 E-mail eunsun@kosha.or.kr 	인천 광역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장 소재지 인천, 부천, 김포, 고양, 파주, 의정부, 동두천, 구리, 남양주, 양주, 포천, 연천, 강원도 철원군 TEL 032-510-0605, 0606 FAX 032-575-7287 E-mail kimhd@kosha.or.kr
	부산 광역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장 소재지 부산, 울산, 경남 TEL 051-520-0534, 0529 FAX 051-520-0539 E-mail seonghee@kosha.or.kr 	대전세종 광역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장 소재지 대전, 세종, 충남, 충북 TEL 042-620-5619, 5611 FAX 042-632-4787 E-mail jspark427@kosha.or.kr
	광주 광역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장 소재지 광주, 전남, 전북, 제주 TEL 062-949-8747, 8748 FAX 062-944-8273 E-mail gjcg@kosha.or.kr 	경기지역 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장 소재지 수원, 용인, 화성, 평택, 안성, 오산, 안산, 시흥, 안양, 군포, 과천, 의왕, 광명, 성남, 하남, 이천, 경기광주, 여주, 양평 TEL 031-259-7172, 7173 FAX 031-259-7120 E-mail mh.baek1@kosha.or.kr
	대구 광역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장 소재지 대구, 경북 TEL 053-609-0526, 0535 FAX 053-421-8629 E-mail cgd9@kosha.or.kr 	중소기업 중앙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TEL 02-2124-3272 FAX 02-786-1892 E-mail leescno2@kbiz.or.kr

건설업	주관기관	연락처	주관기관	연락처
URL주소 https://www.kosha.or.kr/survey/s.jsp?p=744_ QR코드 	서울광역본부	TEL 02-6711-2871, 8279	인천광역본부	TEL 032-510-0581~0588
	부산광역본부	TEL 051-520-0592~0590	대전세종광역본부	TEL 042-620-5621~5629
	광주광역본부	TEL 062-949-8791~8797	경기지역본부	TEL 031-259-7135~7145
	대구광역본부	TEL 053-609-0592~0590		

2024년도 중·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서

신청 사업장 정보 (필수 작성)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개시번호)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팩스번호	
소재지	상시근로자수 *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수	
대표자	성명	휴대전화번호
업무담당자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KOSHA-MS 인증여부		<input type="checkbox"/> 인증 <input type="checkbox"/> 인증예정(진행중)

* 컨설팅 자부담금 : ■ (30인 미만) 수수료 부담 없음 ■ (30~49인) 수수료 30,000원/회 ■ (50인 이상) 120,000원/회

컨설팅 기관 (선택 작성)	* 희망 기관 지정 시 작성
민간기관 컨설팅 지정 기관명	* 컨설팅 참여기관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2024년도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에서 추진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하며 컨설팅 시 대표이사 또는 경영 책임자가 참여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적극 추진할 것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_____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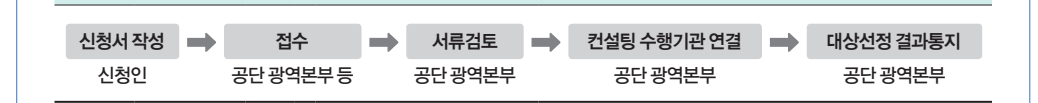
위와 같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 수집·이용)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안내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안전보건공단의 사업수행을 위한 업무연락, 민간기관 컨설팅 시 배정된 민간기관(제3자) 사업수행을 위한 업무연락, 고객만족도조사, 지원효과 제고를 위한 연구, 자료 송부
- 수집·이용 개인정보 : 성명, 휴대폰번호, e-mail
- 보유·이용기간 : 컨설팅 년도 포함 3년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안전보건자료 등을 제공받을 수 없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처리절차



- 신청서 다운로드 : 공단홈페이지(www.kosha.or.kr) ⇨ 사업안내 ⇨ 산업안전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 자료실
- 관련 자료 :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지원 가이드」 자세히 보기

